명지 더샵 퍼스트월드 (명지국제신도시 복합2블록) 오피스텔 입주자 모집공고

- ▣ 본 오피스텔은 건전한 청약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부산본부 건축환경팀–12746호(2017.09.14)로 분양신고 수리
- ▣ 본 건축물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건축물입니다. [승인번호 : 제2017–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호(2017.05.30.)]
- ▣ 공급대상물 (오피스텔 / 금회 판매시설 제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명지지구 복합 2블록
  - 건축연면적 : 전체 274,223.9309㎡ 중 오피스텔 30,050.9600㎡
  - 건축물용도 : 오피스텔
  - 공급규모 : 지하3층, 지상3층~26층 오피스텔 1개동 총 260실
  - 층별용도 : 지상1층~지상2층 판매시설, 지상3층~지상26층 오피스텔, 지하3층~지하1층 주차장, 기계실 등

▣ 공급면적

(단위:실,㎡)

군	타입	공급실수	실별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기타공용면적	주차장면적	계	
1군	29A	96	29.44	14.76	44.20	3.93	20.11	68.24	14.2384
	29B	48	29.44	15.27	44.71	3.93	20.11	68.75	14.2384
2군	41	22	41.74	21.07	62.81	5.58	28.51	96.90	20.1872
	50	22	50.71	24.51	75.22	6.77	34.63	116.62	24.5254
3군	93	48	93.91	43.58	137.49	12.55	64.14	214.18	45.4188
	95	24	95.09	44.85	139.94	12.70	64.94	217.58	45.9895

▣ 공급금액

(단위:원)

군	타입	호수	공급실수	구분	해당실수	분양가				계약금(10%)	중도금(50%)					잔금(40%)
						토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약시	18.02.27	18.08.27	19.02.27	19.08.27	20.02.27	입주시
1군	29A	2,3호	24	15~20층	12	15,342,424	119,961,433	11,996,143	147,30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14,730,000	58,920,000
				21층이상	12	15,342,424	121,325,069	12,132,507	148,800,000	14,880,000	14,880,000	14,880,000	14,880,000	14,880,000	14,880,000	59,520,000
		4,5호	24	15~20층	12	15,342,424	122,688,705	12,268,871	150,30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15,030,000	60,120,000
				21층이상	12	15,342,424	124,052,342	12,405,234	151,800,000	15,180,000	15,180,000	15,180,000	15,180,000	15,180,000	15,180,000	60,720,000
		12,13호	24	15~20층	12	15,342,424	124,143,251	12,414,325	151,900,000	15,190,000	15,190,000	15,190,000	15,190,000	15,190,000	15,190,000	60,760,000
				21층이상	12	15,342,424	125,506,887	12,550,689	153,40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15,340,000	61,360,000
		14,15호	24	15~20층	12	15,342,424	117,234,160	11,723,416	144,30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14,430,000	57,720,000
				21층이상	12	15,342,424	118,597,796	11,859,780	145,800,000	14,580,000	14,580,000	14,580,000	14,580,000	14,580,000	14,580,000	58,320,000
	29B	1호	12	15~20층	6	15,342,424	119,688,705	11,968,871	147,0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14,700,000	58,800,000
				21층이상	6	15,342,424	120,961,433	12,096,143	148,400,000	14,840,000	14,840,000	14,840,000	14,840,000	14,840,000	14,840,000	59,360,000
		6호	12	15~20층	6	15,342,424	122,415,978	12,241,598	150,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15,000,000	60,000,000
				21층이상	6	15,342,424	123,779,615	12,377,961	151,50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60,600,000
		11호	12	15~20층	6	15,342,424	123,779,615	12,377,961	151,50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15,150,000	60,600,000
				21층이상	6	15,342,424	125,143,251	12,514,325	153,000,000	15,300,000	15,300,000	15,300,000	15,300,000	15,300,000	15,300,000	61,200,000
		16호	12	15~20층	6	15,342,424	116,961,433	11,696,143	144,000,000	14,400,000	14,400,000	14,400,000	14,400,000	14,400,000	14,400,000	57,600,000
				21층이상	6	15,342,424	118,234,160	11,823,416	145,400,000	14,540,000	14,540,000	14,540,000	14,540,000	14,540,000	14,540,000	58,160,000
2군	41	8호	11	15~20층	6	21,752,484	157,406,833	15,740,683	194,900,000	19,490,000	19,490,000	19,490,000	19,490,000	19,490,000	19,490,000	77,960,000
				21층이상	5	21,752,484	159,134,105	15,913,411	196,800,000	19,680,000	19,680,000	19,680,000	19,680,000	19,680,000	19,680,000	78,720,000
		9호	11	15~20층	6	21,752,484	161,043,196	16,104,320	198,900,000	19,890,000	19,890,000	19,890,000	19,890,000	19,890,000	19,890,000	79,560,000
				21층이상	5	21,752,484	162,770,469	16,277,047	200,800,000	20,080,000	20,080,000	20,080,000	20,080,000	20,080,000	20,080,000	80,320,000
	50	7호	11	15~20층	6	26,427,062	166,793,580	16,679,358	209,900,000	20,990,000	20,990,000	20,990,000	20,990,000	20,990,000	20,990,000	83,960,000
				21층이상	5	26,427,062	168,611,762	16,861,176	211,900,000	21,190,000	21,190,000	21,190,000	21,190,000	21,190,000	21,190,000	84,760,000
		10호	11	15~20층	6	26,427,062	170,611,762	17,061,176	214,10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21,410,000	85,640,000
				21층이상	5	26,427,062	172,611,762	17,261,176	216,30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21,630,000	86,520,000
3군	93	1호	12	3~4층	2	48,940,504	210,235,905	21,023,591	280,20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28,020,000	112,080,000
				5~10층	6	48,940,504	208,963,178	20,896,318	278,800,000	27,880,000	27,880,000	27,880,000	27,880,000	27,880,000	27,880,000	111,520,000
				11~14층	4	48,940,504	207,781,360	20,778,136	277,500,000	27,750,000	27,750,000	27,750,000	27,750,000	27,750,000	27,750,000	111,000,000
		2호	12	3~4층	2	48,940,504	215,508,633	21,550,863	286,0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114,400,000
				5~10층	6	48,940,504	214,144,996	21,414,500	284,50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28,450,000	113,800,000
				11~14층	4	48,940,504	212,872,269	21,287,227	283,10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28,310,000	113,240,000
		5호	12	3~4층	2	48,940,504	218,054,087	21,805,409	288,80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28,880,000	115,520,000
				5~10층	6	48,940,504	216,781,360	21,678,136	287,40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28,740,000	114,960,000
				11~14층	4	48,940,504	215,508,633	21,550,863	286,0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28,600,000	114,400,000
		6호	12	3~4층	2	48,940,504	205,054,087	20,505,409	274,500,000	27,450,000	27,450,000	27,450,000	27,450,000	27,450,000	27,450,000	109,800,000
				5~10층	6	48,940,504	203,872,269	20,387,227	273,20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27,320,000	109,280,000
				11~14층	4	48,940,504	202,599,542	20,259,954	271,80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27,180,000	108,720,000
	95	3호	12	3~4층	2	49,555,455	213,767,768	21,376,777	284,700,000	28,470,000	28,470,000	28,470,000	28,470,000	28,470,000	28,470,000	113,880,000
				5~10층	6	49,555,455	212,495,041	21,249,504	283,30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28,330,000	113,320,000
				11~14층	4	49,555,455	211,222,314	21,122,231	281,90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28,190,000	112,760,000
		4호	12	3~4층	2	49,555,455	219,040,495	21,904,050	290,50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29,050,000	116,200,000
				5~10층	6	49,555,455	217,767,768	21,776,777	289,100,000	28,910,000	28,910,000	28,910,000	28,910,000	28,910,000	28,910,000	115,640,000
				11~14층	4	49,555,455	216,404,132	21,640,413	287,600,000	28,760,000	28,760,000	28,760,000	28,760,000	28,760,000	28,760,000	115,040,000

▣ 공통사항

- 상기 분양금액은 각 오피스텔 타입별, 층 등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오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 ·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 상기 분양금액에 각 오피스텔 실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별 소유권이전등기비용, 통합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은 건축법에 따라 안목치수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2014.12.03개정].
- 오피스텔 공급대상 260실은 3개군 5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청약신청 시 견본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기계실, 전기실 등), 관리실(MDF, 방재센터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실 별로 지하주차장 및 건축설비실에 대한 금액이 상기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 용도는 업무시설이며 부수적으로 숙박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 시설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판매시설 각각의 연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으며, 오피스텔의 각 세대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의 대지지분을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되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버림하였습니다.
-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은 공용면적으로 하여, 공용면적은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되었습니다.
-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정산할 예정입니다.
-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 시 납부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 중도금은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부과됨)
-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은 상기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납부하고,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 5일 이후에는 미납한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청약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일(2017.09.1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개인에 따라{특히,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은 타입과 상관없이 군별로 접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군 별로는 1개씩 접수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개까지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동일군의 2개이상 접수시 모두 무효)
- 동호실은 당첨자 발표일에 전산 추첨하여 결정됩니다.

▣ 청약일정 및 장소

구분	일정	장소
청약일시	• 2017.09.20(수) ~ 2017.09.21(목) (2일간) • 은행 창구 접수 : 국민은행 본/지점 접수 10:00 ~ 16:00 인터넷 접수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수 08:00 ~ 17:30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수 08:00 ~ 17:30	• 국민은행 본/지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
당첨자발표	• 2017.09.26(화) 16:00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및 견본주택
계약 일시	• 2017.09.27(수) ~ 2017.09.28(목) (10:00 ~ 16:00)	• 당사 견본주택

- 청약은 국민은행 본/지점 창구 및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통해 청약 가능하며, 아파트투유 및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청약이전에 전국 시중은행지점(국민, 신한,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시티)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청약 : 신한, 기업, 수협, 농협, 우리, SC, KEB하나,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시티은행의 청약신청금 인출 계좌 소유자
  - – 국민은행 홈페이지 청약 : 국민은행 청약신청금 인출 계좌 소유자

▣ 청약신청방법

■ 인터넷 청약안내

구 분	구비 서류
이용안내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용방법 및 절차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① 접속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상단 부분 '도시형/오피스텔 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청약 : 주택명 및 모델번호 선택 → 주소지 입력 →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본/지점 창구 청약 시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	• 청약신청서 (국민은행 창구에 비치) • 본인 도장 (또는 서명)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청약신청인 명의)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법 인	• 청약신청서 (국민은행 창구에 비치) • 법인인감 지침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필수)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증) •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청약신청금 환불 받을 통장 사본 1부 (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공통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구비) • 청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사본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납부 방법	
	인터넷 청약 시	국민은행 본/지점 방문 청약 시
100만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국민은행 청약접수 창구에서 직접 납부

※ 청약신청금 무통장 입금 시, 무통장 입금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지정된 계좌 외 입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청약 시 유의사항

- 견본주택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당사 및 은행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금융결제원에서는 당첨자 선정 시 신청자격 및 신청건수에 대한 확인은 하지 않으며,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군 내 중복당첨시 모두 무효처리 되오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은행에서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입력)사항으로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사업주체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관련서류를 청구하여 신청자격 유무를 대조, 확인한 후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추첨 : 금융결제원 전산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당첨자발표 : 2017.09.26(화)
- 발표장소 : 아파트투유(www.apt2you.com) 및 당사 견본주택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을 통하여 당사에서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방법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2017.09.27(수) 이후.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제외
- 환불방법

구 분	환불 장소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국민은행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 : 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 됨 • 자동환불 미신청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에 청약 접수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환불 받아야함.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당첨자 포함)
- 청약 시 환불 신청한 계좌가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청약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고 전액 환불됩니다.
- 청약금 환불은 청약 신청 시 환불계좌로 등록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합니다.
-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환불신청 계좌오류 등 송금불능사유 발생 시 환불일자가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는 당사의 책임이 아닙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 2017.09.27(수) ~ 2017.09.28(목) (10:00~16:00까지)
- 계약체결장소 : 당사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번지, 전화번호 : 1644–9050)
-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하여야 하며,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 외 계좌입금 또는 현장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회사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계약 시	• 청약신청접수(영수)증 • 계약자 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시에는 서명)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계약금 무통장 입금확인증
법 인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제출) • 법인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계약금 무통장 입금확인증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배우자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 대리 신청(배우자 및 직계존 · 비속 포함)으로 간주. • 상기 본인 또는 법인계약 시 구비서류 일체 • 계약자 인감도장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계약자의 인감도장(또는 계약자 자필 서명)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시에는 대리계약 불가함.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는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 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일 경우 구비서류는 해당 건수 수량에 맞추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국민은행	067501–04–072852	대한토지신탁(주)

- 동호수를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라며, 계좌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동 예금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무효로 하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충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된 납부일에 중도금 및 잔금을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212동 301호를 계약한 홍길동 → 2120301홍길동)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단지 내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계약체결 후 부득이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저층부 판매시설의 입주 시기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릅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합니다.

▣ 중도금 대출안내

- 본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무이자입니다.
- 대출금융기관 : 계약체결 이후 사업주체가 지정한 은행(단, 대출금액 및 대출은행은 정부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 등의 사유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조건 : 해당 금융기관의 대출자격 및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 대출알선금액 : 중도금 중 해당금액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될 경우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 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 해제/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중도금 대출은 금융기관별 인당 건수가 제한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거나, 입주지정기간 전에 대출 받은 중도금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인하여 사업주체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그 금액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 "수분양자"는 잔금완납(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무관함)전에 본 분양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할 수 있으며 "(주)포스코건설"과 "대한토지신탁(주)"이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의무의 양도, 양수에 따른 모든 책임과 비용은 양도, 양수인이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점유자를 포함 한다)은 "수분양자"의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한 이 계약 및 분양계약과정에서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단, 분양대금의 연체 및 잔금 일부가 납입 되어 있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다. "(주)포스코건설" 및 "대한토지신탁(주)"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승계로서는 "(주)포스코건설" 및 "대한토지신탁(주)"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상기항의 분양권 전매는 "(주)포스코건설)"과 "대한토지신탁(주)"에 대한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발생한 전매 당자간의 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 "수분양자"가 위 표시재산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대한토지신탁(주)"의 소정의 양식과 절차에 따라 "대한토지신탁(주)"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무의 불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분양자"에게 있으며 위 통지의무를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 · 형사상 세무상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하여 "수분양자"가 책임진다.
- "수분양자"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분법"이라고 한다.)" 제6조의 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분법" 제 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 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항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본 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는 "대한토지신탁(주)"의 사전승인 및 요청하는 서류에 양수인과 양도인이 함께 배석하여 기명날인한 후 양도, 이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 상기 항에 의하지 아니한 양도, 이전 및 승계로서는 "(주)포스코건설"과 "대한토지신탁(주)"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 입주 예정일

- 준공 및 입주 예정일 : 2020년 08월 31일 예정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 통보 하며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잔금을 실 입주 예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본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본 유의사항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공통사항

- 본 모집공고의 제반내용 및 건립된 견본주택은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인 · 허가 내용의 변경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2014.12.0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오피스텔 전용면적 산정방식이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선) 면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전용면적을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등기 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대지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오피스텔과 공동주택, 판매시설, 일반복리시설은 동일한 사업부지에 대지경계(구획)이 없는 공유토지이며, 대지지분 및 공유시설물을 공유합니다.
- 입주시 입주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지정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간(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 입주 지원을 위한 업무시설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노동조합의 파업. 태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입주지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은 전체 입주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 · 단체 포함)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해야합니다. 단, 공급계약이나 매매 부동산 거래신고로 갈음하고 증여, 교환 등만 해당됩니다.
  - – 외국인이 상속 또는 경매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국적이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등 계속보유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분양홍보물

- 공급안내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카달로그 등 홍보물에 사용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컷, 단위세대는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견본주택,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모형, CG 상의 조경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추후 실제 시공 시, 조경 및 식재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신문, TV, 인터넷 등 매체 상의 기사, 자료, 문구, 이미지 등은 실제 시공 및 분양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인쇄물의 가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는 실제 색상 및 패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홍보자료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 계약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이나 신분증/등본을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해태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을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시까지 거주지, 연락처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내용을 [주민등록등본 포함] 당사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안내문 등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본 오피스텔의 계약면적 및 대지의 공유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 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본 계약시 동일 평면이지만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될 수 있으니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오피스텔의 분양금액은 각 호실의 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해 샘플하우스(Mock-up)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 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시 계약자의 신용등급이 변동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중도금 대출은 사전에 지정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의 소유권 보존등기 및 수분양자의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으며, 수분양자의 사유(담보대출불가 등)로 사업주체에 빠른 이행 요구 및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설계 관련 유의사항

- 93,95타입의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89호; 2013.12.13.] 제1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 2015.04.30.]제2조에 의거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합니다.
- 본 건물은 복합건축물로 단지 내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로 계획되어 있으며 각 용도 시설은 별도 매각시설로서 매각주체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시설의 규모 및 디자인 계획의 변경 및 매각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 각 실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주상복합단지로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구성되고, 공동주택과 비주거시설(오피스텔, 판매시설)간의 차량출입구와 지하주차장, 전용공간이 분리되어 있으며,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비주거시설은 오피스텔,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물 상호 간섭으로 인한 조망,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등의 자료를 통해 충분히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저층부에 판매시설이 있으며, 준공 시까지 판매시설동의 입점 업종, 업태, 각 점포의 면적, 점포 위치, 보행동선, 입면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 변경 시 오피스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분양사업자가 관련 설계변경 및 인/허가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준공 전,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실내, 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저층부 판매시설동 및 오피스텔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옥상장식물, 주동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단지 배치상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으며, 오피스텔 천장내부에 상부실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사무소, 피트니스, 회의실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설치공간만 제공되고 시설내 집기,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매,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 마감수준은 지하층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타일 및 도장마감 기준이며, 로비층 엘리베이터 홀과 복도는 바닥–석재, 벽–타일 및 도장 마감 기준입니다. 또한, 기준층의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마감은 바닥–타일, 벽–도장 마감 기준이며, 동등수준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허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입주 후 하자 등으로 인한 계약자 손해보상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주 시 단지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협의 또는 설계변경, 경관 및 색채계획 등 포함)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택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사용승인 이후 단지 내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 조경 시설물,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오피스텔, 판매시설의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됩니다.
- 외부 시설물 가로등, 가로수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이며 공동으로 관리비를 정산합니다.
- 단지 및 오피스텔 내 공용시설(E/V,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시설 등)의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분양사업자가 경미한 사항의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조감도, 실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외부의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해당 관청 변경 경관심의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및 판매시설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등 기타 설계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등은 분양자료(CG, 모형 등)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지 내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의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시에 한해 동질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현관 신발장, 주방가구, 붙박이장,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각 공급형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분양사업자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계약면적 외의 타 시설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 욕실장 등)가 설치되어 있는 벽, 바닥, 천장면의 마감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 가구, 전기 설비 설치물이 시공되면서 일부 사용불가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와 접하는 공간은 내 · 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으로 인한 마감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난방 및 환기 등의 조치를 하시길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배치상 라인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호실 또는 타입별 선택형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를 양지하여, 선택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며, 형평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어 확인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거실의 아트월 설치 및 복도 등에 벽지 외의 두께가 있는 마감재의 마감으로 인하여 안목길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자재(천연석재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각 세대별 현관은 출입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신발장 내부에 세대 전기통신함이 설치되며, 평형 및 타입에 따라 위치가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분전반, 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월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평형별로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되며,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주방/욕실 직배기로 인하여 상부층 세대 및 인근세대에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일부 다용도실 천정에는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 및 환기용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욕실내 욕조 및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으며,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창호크기, 개폐방향 등은 구조 및 안전성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별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지상9층 41, 50타입 세대는 다른 층의 동일 타입 세대와 외부 창호 크기가 다릅니다.
- 본 공사시 마감수준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세부 계획 시 동등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냉난방은 지역난방 열원을 이용하며, 난방방식은 29A,29B,41,50형은 바닥온돌 복사난방방식, 93, 95형은 실내 천정 카세트형 팬코일 유니트방식이 적용되며, 냉방시설은 실내 천정 카셋트형 팬코일 유니트방식이며 점검구가 설치되고 설치위치, 수량 등은 타입별, 호실별로 달라질 수 있으며, 실외기실 및 냉매배관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입주자가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여름철 냉방 가동 시 천정의 FCU의 소음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는 저층용(지하층~지상14층)와 고층용(지하층~지상2층,지상15~26층)으로 분리되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 최상층은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지붕 및 옥상층에는 관련법에 따라 헬리패드가 설치됩니다.
- 오피스텔 지붕 냉각탑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자는 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오피스텔에 설치된 부대복리시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 입주민 전체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시공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재질, 간판형태 등)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민공동시설내의 집기는 일부만 제공되며, 집기 및 비품, 운영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부대시설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의 주차장 진출입로는 1개소로 판매시설과 공동으로 사용하며,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차장은 판매시설 이용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 면적은 시설별 계획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면적을 배분하였음. 이에 대하여 계약 전 필히 확인 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의 지하주차장의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아, 추후 주차장 램프 천정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재활용품보관실, 자전거보관소,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오피스텔 쓰레기 처리장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은 거리에 따라 불편할 수 있으므로 위치를 필히 확인하야하며,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 수거는 지자체 수거차량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운영시기 및 방식은 지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후 판매시설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 체결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및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기계/전기실은 설계변경을 통하여 실 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재질,간판형태 등), 실내구획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외부여건

- 대지경계선 밖은 당 사업부지가 아니며 인허가청의 계획변경에 따라 도로 패턴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전기, 가스, 난방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 취소 ·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자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명지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 ·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 대지경계에 구조물 등이 불일치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의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본 지구는 선 시행된 사업지구이며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 장애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인근의 신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내 학교설립은 공동주택 건립계획에 따라 연기 또는 취소 될 수 있어 향후 학생 수용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의 책임은 없습니다.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먼지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부지 북측에 공동주택, 동측에 23m도로, 남측에 23m도로, 서측에 공동주택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부지 동측으로 복합개발용지, 서측으로는 의료용지가 계획되어 있어 건설공사와 관련한 소음, 먼지, 진동 및 교통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적 확정측량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으로 인한 기부체납면적 추가발생으로 대지면적이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명지지구 남서측에 인접하여 부산환경공단 명지사업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남측에 입접하여 명지톨게이트 및 을숙도대교, 북동측에 인접하여 명지IC 및 2번국도, 동측에 르노삼성대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 명지지구 북측으로 김해공항이 위치하고 있어 항공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를 인지 및 확인하지 않는 대에 따른 불이익은 계약자가 감수하여야 합니다.
- 명지지구 내 주유소, 전기공급시설, 열공급시설(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배수장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므로 설치위치 등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명지지구 지구단위 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등에 입주자 협의 또는 기타 인허가 관청요구에의해 추후 설치되는 보행자통로등으로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해서는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 위치한 상업시설 및 근린시설, 주차장시설, 주유소, 종교시설, 편의시설, 서부지원, 을숙도대교, 김해공항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대기,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자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지되지 않은 명지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으로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단지 배치 상 쓰레기(음식물, 폐기물 및 재활용 등) 분리 수거시설 등과 인접하는 세대는 악취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차이에 의해 본 단지에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무인택배 보관소는 지하층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에 따라 동선 차이가 있으며, 위치 및 설치대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판매시설과 혼재되어 있어, 상행위로 인한 외부인과의 동선, 소음, 야간 조명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숙지하여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일부 라인은 일조 및 채광 등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배치계획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 같은 사항을 미확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단지 내 입주자 공동시설 공간의 시설물에 대한 수량과 바닥, 벽체 마감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좌측 판매시설 옥상에 냉각탑의 설치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을 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소음, 진동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흙막이 설계는 현장 상황에 따라 공법 및 범위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은 지역난방을 이용한 냉, 난방용 FCU가 설치하였으며, 일부 상가에 에어컨 추가 설치로 인하여 옥상 일부구간에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옥상 일부구간에 실외기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소음 및 조망 간섭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공사 공법은 토질 및 지하수위 등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질조사에 의하여 기초설계가 되어있으나 실제 지내력 확인 후 기초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입이나 호실에 따라 내/외부 창호, 붙박이장, 주방가구 등의 크기, 구성, 형태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입주자 주차공간으로 음식물 쓰레기 차량, 대형 이삿짐 차량 등과 같은 대형 화물 차량 진입 계획이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추후 주차장 램프 천정고에 따른 차량 진입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의 주차장 면적은 시설별로 주차장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램프, 통로, 주차로 등) 및 판매시설 이용자의 동선 상 필요한 오피스텔 주차장 통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층 주차장 면적에서 해당층 시설별 계획주차대수 비율에 따라 면적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시설 이용자가 동선 계획 상 해당층 주차장의 면적을 시설별로 배분된 일부분을 통로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오피스텔 입주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출입구의 형태(평면형태, 외관형태) 및 크기는 평면의 형상 및 진입방식에 따라 각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배치 및 사용편의성을 충분히 확인 후 계약바랍니다.
- 단지 내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창호 디자인 및 색상, 프레임 사이즈, 유리 두께 등은 외부입면 계획에 따라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구조 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실별, 층별, 위치 별로 창호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피트니스 센터, GX룸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 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형태(색채, 마감재, 간판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커뮤니티시설 포함)의 구성 및 실배치 형태, 내부구조 등 건축계획과 마감재 및 집기는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인허가관청의 인허가 조건(건축허가도면, 건축 심의조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의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및 비상차량동선 등), 조경수와 조경시설(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선형, 위치, 크기, 모양, 대지경계선형 등의 사항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수와 조경시설의 위치는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단지 옥외공간의 조화, 에어컨 실외기공간 설치 등에 따라 선형이나 포장과 시설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있는 옥상, 휴게공간, 운동시설 등의 조경시설물 설치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맞은편 복합 3–1블록의 업무시설(오피스1), 맞은편 인근 3–2블록의 업무시설(오피스2), 3–3블록 호텔/컨벤션 시설과 일부 세대(호실)와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분양 신청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경관조명 및 공용시설 조명 오피스텔 저층부 판매시설 조명, 개별 상가 간판 등에 의해 일부 호실은 눈부심이 발생 될 수 있습니다를 충분히 숙지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옥외공간의 모든 시설은 입주민 공동의 시설로 개인의 기호에 의한 변경은 불가합니다.
-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옥외공간의 경관 및 모든 시설의 관리책임 및 비용은 입주민에게 있습니다.
- 개인 부주의로 인한 옥외공간에서의 안전사고 발생시에는 입주민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당사가 시공하므로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된 용도로 하면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 제2010–351호)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습니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의 경우 지역 난방 시스템에 의해 비 냉난방 시에도 기본요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설계계획 상 이사 등은 엘리베이터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최상층에 엘리베이터 기계실 설치로 인해 일부 소음진동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지자체 협의에 따라 본 공사에 쓰레기 분리수거 시설 위치 및 개소는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 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 · 후 최종 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단지 중앙부에 내에는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24시간 개방하여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으로써 「건축법 제43조」에 따라 공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써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단지내 전면공지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정된 공간으로 입주자가 점유 또는 임의로 휀스, 주차장, 쓰레기적치장등의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주차장은 주차공간의 분포 및 위치에 따라 동별 주차장 이용 시 거리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오피스텔과 판매시설 주차장 진입로는 1개소로 같이 사용합니다.
- 오피스텔동 판매시설 상부는 일부 옥상 조경 구간으로 계획되어 있고, 오피스텔 입주민이 사용하는 외부 공간으로,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사생활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엘리베이터의 규격으로 인하여 대형이삿짐은 일부 운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지붕 일부구간에 냉각탑, 에어컨실외기, 설비공간 등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눈부심, 소음, 진동, 연무, 냄새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시설 점포의 전면 공간은 오피스텔 및 점포 소유자의 공용부분으로 점포의 소유자가 사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포에 면한 일부구간에 대하여 점포의 소유자가 상행위에 따른 부속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피스텔 입주민은 소음피해 또는 통행의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향후 오피스텔을 제3자에게 매매 또는 임대할 경우, 위항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제3자가 동의하여야 하며, 판매시설의 구분 소유자들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되었으며,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유치원, 학원 등의 학생 수송을 위한 차량이 출입할 수 있으며, 정류장 등은 주거 시설 입주자와 공동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에 따른 공중화장실 적용대상 건축물로 법 제7조와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맞춰 공중화장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부지는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지로 조경계획 및 미술장식품 디자인에 따라 설치위치 및 규모,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공사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색채, 외장재료, 외벽로고사인, 측벽디자인, 창호형태 및 색채 등), 필로티, 동현관, 지하출입구, 난간의 디테일, 문주, DA(Dry Area) 등 외부시설물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의 전시품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 리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모형 포함)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결과 및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 시설물의 마감재료 및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자/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오피스텔 견본주택 관람은 29형, 50형에 대해 가능하며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시 인쇄물, 공급안내를 확인하여야 하며 차후 미확인으로 인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이 가구 설치공간의 폭, 높이, 길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 및 도면에서 이를 확인하고 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각 실의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주방가구로 인하여 가려지는 천정 및 가구 뒷면 및 바닥과 욕실의 욕조의 바닥과 뒷면, 거울 뒷면 등에는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등 일부 주방가구 및 붙박이장 내부에 설비 배관 및 기기가 설치되어 수납공간이 부분 수정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세대 마감자재(수전 및 악세사리류)의 설치 위치는 마감치수 및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위치와 상이하게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실별 현관은 출입 시 시각적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 평형 욕실 내 샤워부스 바닥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평형별 실사용 공간을 고려하여 주방에 설치되는 싱크볼 사이즈 및 형태는 상이하게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타입, 공급안내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품질 이상의 타사 제품 등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미건립 형의 내부 치수 및 마감재 사양은 견본주택과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실별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어 있으며, 유상옵션 미선택시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선택형 타입에 대해서 각각 설치되는 가구, 마감재 등이 일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지하고 이와 관련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고 형평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시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는 실제 시공 시 이동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동안 공개 후 관계규정[건설교통부 주관30415–26905(1990.10.15)]에 의거 평면설계 및 마감재를 촬영 보전한 뒤 회사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계약 시 각종 상행위 및 견본주택 인근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견본주택의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달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허가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본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아트월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습니다.(분양가 미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소방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 환기구 등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 시공시 소방법 및 건축허가도면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 소방시설로 실제 시공 시 각 타입에 따라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변경됩니다.
- 모형 및 조감도 등에 표현된 오피스텔 외벽의 줄눈형태는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학교관련 사항

- 명지지구 복합 2블록 주택건설사업으로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명지3초, 중학생은 명지중 또는 9학교군 내 중학교에 학생배치가 가능합니다.
  ※ 명지지구 학생수 증가에 따른 신설 초,중학교 개교 시 통학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초,중,고등학교는 당 사업지의 공동주택의 추가공급에 따라 신설될 예정이며, 학교 개교시기에 따라 입주 인근 학교로 분산 수용 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 미 해당교육청(부산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교육청(부산북부교육지원청, 부산시교육청)에서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 01282017–104–0003400 호	30,505,560,000원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용어의 정의(보증약관 제1조)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 이라 한다)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가.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이 경우 실행공정률 및 예정공정률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시설의 전부에 대한 공정률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3조)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회사는 당해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의 분양이행(당해 사업장의 건축허가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또는 환급이행(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보증서발급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4.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분양광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분양광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건분법에 따라 분양광고에서 정한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또는 오피스텔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5.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건축주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잔금 중 50퍼센트 이내에서 납부한 잔금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건 축	전 기	소방,통신
회 사 명	㈜기하엔지니어링	㈜진일기술단	(주)동일건축
감리금액	5,022,050,000	731,261,500	687,500,000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수탁사)	위탁사	시공사	분양대행사
상호	대한토지신탁(주)	엠에스에이㈜	㈜포스코건설	(주)건물과사람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삼성동) 아셈타워 26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1901호 (재송동, 큐비이센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괴동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174, 605호 (서초동, 강남미래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1492513	180111–1035591	174611–0002979	110111–1826118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등록업자 : 대한토지신탁(주)
- 부동산개발업등록번호 : 서울 080011

▣ 신탁계약관련 유의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수탁자 겸 매도인 "갑", 시공사 "병", 위탁자 엠에스에이(주)간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함)이 체결되어 있음을 "을"은 인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한다

- 본 사업은 엠에스에이(주)가 대한토지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엠에스에이(주)이고, 대한토지신탁㈜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한다.
- 공급대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대한토지신탁(주)'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 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한다.
- 본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엠에스에이(주) 및 수탁자 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으로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준공검사전 발생하자 포함)은 관계법령에 의거 위탁자인 엠에스에이(주), 및 시공사인 (주)포스코건설이 각사의 업무역할에 따라 부담하며, 수분양자는 대한토지신탁(주)에게 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개별분양세대에 대하여는 매수인에게로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지위에서 가지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신탁목적 달성,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와 수탁자[대한토지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모든 권리 · 의무(하자보수책임 및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본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 · 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엠에스에이(주)에게 면책적 ·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토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또는 그 밖의 부대사업비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일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수분양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관련 법령상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견본주택 위치 :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번지

▣ 당사 홈페이지 : www.myeongji–thesharp.co.kr

▣ 문의 : 1644–905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1644–905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1644-9050

29㎡ / 41㎡ / 50㎡ / 93㎡ / 95㎡ **총260실**

■ 시행사 : 대한토지신탁(주) ■ 위탁사 :엠에스에이(주) ■ 시공사 : (주)포스코건설

www.myeongji-thesharp.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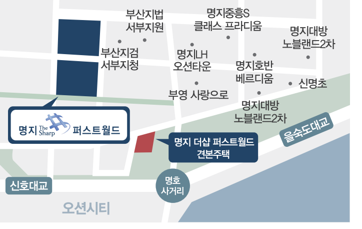

모델하우스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동 2835